

## 목 차

- 00 총 칙
- 01 토공사
- 02 가설공사
- 03 철근콘크리트 공사
- 04 철골 공사
- 05 판넬 공사
- 06 건축물 부대공사
- 07 건축폐기물 공사

# OO 총 칙

## 00-1 공통사항

### 1. 내용

#### 1. 1 적용범위

-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 1. 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 1. 3 용어의 정의

-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 기준 ·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1. 4 담당원의 업무

-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1. 5 시공자의 책무

-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공법 등의 결정

-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자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자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00-2 현장관리

### 1. 내용

####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5 용지의 사용

-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1.12 건물 등의 보양

-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 00-3 재료관리

### 1. 내용

#### 1.1 일반사항

##### 가. 재료일반

-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가. 재료시험일반

-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장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 00-4 시공관리

### 1. 내용

####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 1.2 공사기간

-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자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문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3 작업시간의 조정

-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 1.5 공정표와 그 관리

-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자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 1.8 측량

-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0-5 품질관리 및 검사****1. 내용****1.1 품질관리의 실시**

-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 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1.5 기성 및 준공검사

-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1. 내용

####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1.2 안전조치

-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주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주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8 환경오염방지

-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해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00-7 공사기록 등

### 1. 내용

####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00-8 인 도

### 1. 내용

####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빌주자에게 인도한다.

-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나. 준공도
-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 O1 토공사

## 01-1 토공사 일반

### 1. 대지정리(site clearing)

-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 2. 터파기(excavation)

-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2-2(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v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략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3. 배수 지수

-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관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을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4. 기초바닥 고르기

-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 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 5.5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물에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 6. 잔토처리

-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01-2 철거공사

## 1. 일반사항

-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1.4 제출물
  -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준지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작업조건

-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을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 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 이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불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해체 및 철거

-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크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을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3.6 각종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증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리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접종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 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 O2 가설 공사

### 02-1 가설공사 일반

#### 1. 시공계획

1.1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및 구조, 자재 반입로,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2. 가설재료

2.1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 3. 가설건물

3.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그 배치 및 설치 기준을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토록 한다.

3.2 가설건물의 규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3.3 공사 도중에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설건물 일체는 발주처에게 인계되며 그 시설비는 정산 지불하지 아니한다.

#### 4. 공사용 각종 설비

4.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가스,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설치비 및 운영비와 사용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5. 가설 소화설비 및 방화교육

5.1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종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5.2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6. 비계 및 비계다리

##### 6.1 외부비계

1)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MOCS, KASS에 따른다.

##### 6.2 비계다리

1) 폭 1.9m 이상, 둘매 3/10( $17^\circ$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2) 주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견들거리지 않게 겹쳐대 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 7. 임시통행로

7.1 도면의 지정된 위치에 보행자용 임시통행로를 안전한 구조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8. 안전시설

8.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9. 집진설비

9.1 분진 등 비산방지를 위해서 집진설비를 설치한다.

# 03 철근콘크리트공사

## 03-1 거푸집 공사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이 사방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관 밤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 1.3 제출물

##### 1.3.1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재

(5) 면 목

#### 1.4 운반, 보관, 취급

##### 1.4.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 1.4.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흠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옮려야 한다.

## 2. 재료

###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 2.1.1 거푸집 널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흡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 (6) 형상이 짜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 (7)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 2.1.2 유로폼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2.1.3 띠장 및 동바리

-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4)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 2.1.4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 2.1.5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활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2.1.6 긴결재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 (1) 수압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벽에는 반드시 P.V.C. CORN이 없는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Form Tie 간격은 900mm × 900mm 이하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1.7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을 견고히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 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 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누출을 막아야 한다.

### 2.2 조립

####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 2.2.2 이음매

-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 2.3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 2.3.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3)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흄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 2.3.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돌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자의 표준값

| 항 목  |                                   | 허용차(mm)     |
|------|-----------------------------------|-------------|
| 위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 20        |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 5<br>+ 20 |
|      | 기초의 단면치수                          | - 10        |

표) 콘크리트마루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루리  | 평탄하기 (mm) | 참고                        |                               |
|--|-----------|---------------------------|-------------------------------|
|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루리두께가 7mm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바탕<br>띠장바탕              | 바름바탕<br>이중마감바탕                |
| 마루리 두께가 7mm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ゝ칠바탕<br>타일암착바탕            | 타일바탕<br>융단깔기바탕<br>방수바탕        |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루리이거나 마루리 두께가 매우 얕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 3m당 7이하   | 제물치장콘크리트<br>도장바탕<br>천붙임바탕 | 수지바름바탕<br>내마모마감바탕<br>쇠흙손마루리바탕 |

## 3. 시공

### 3.1 공통사항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 3.2 거푸집의 설계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상기표에서 정한 차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한다.

3.2.3 밟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명예,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3.2.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 3.3 거푸집의 구조계산

3.3.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3.3.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3.3.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여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3.3.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 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3.5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t/m<sup>2</sup>)

| 부어넣기 속도<br>(m/h) |                 | 10이하인 경우 |                          | 10을 넘고 20이하인 경우 |                          | 20을 넘는 경우 |  |
|------------------|-----------------|----------|--------------------------|-----------------|--------------------------|-----------|--|
| H(m)             |                 | 1.5이하    | 1.5를 넘고<br>4.0 이하        | 2.0이하           | 2.0을 넘고<br>4.0 이하        | 4.0 이하    |  |
| 부위               |                 |          |                          |                 |                          | 4.0 이하    |  |
| 기둥               |                 | Wo · H   | 1.5Wo+0.6Wo<br>× (H-1.5) | Wo · H          | 2.0Wo+0.8Wo<br>× (H-2.0) | Wo · H    |  |
| 벽                | 높이 3m이하<br>인 경우 |          | 1.5Wo+0.2Wo<br>× (H-1.5) |                 | 2.0Wo+0.4Wo<br>× (H-2.0) |           |  |
|                  | 높이 3m를<br>넘는 경우 |          | 1.5Wo                    |                 | 2.0Wo                    |           |  |

(주) H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Wo :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t/m<sup>3</sup>)

### 3.4 거푸집 설치

3.4.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 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숫음을 두어야 한다.
- (7) 키홀, 긴홀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벼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 3.4.2 시공이음

-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베티대(Separator)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 속에 묻힌 빙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 3.5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 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3.6 거푸집 박리제

- 3.6.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 3.6.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3.6.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 3.7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 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3.8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베티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 3.9 거푸집의 해체

### 3.9.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 (1)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 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
|-----------------------|--|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 50kgf/cm <sup>2</sup> 이상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 × 2/3(fcu ≥ 2/3fck) 다만, 140kgf/cm <sup>2</sup> 이상 |

다만, 평균기온 10°C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표)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br>평균기온    | 조강 풀틀랜드<br>시멘트 | 보통 풀틀랜드 시멘트<br>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br>풀틀랜드 포줄란 시멘트 A종<br>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br>포틀랜드 포줄란 시멘트 A종<br>풀라이애쉬 시멘트 B종 |
|--------------------|----------------|--|---|
| 20°C 이상            | 2              | 4  | 5   |
| 20°C 미만<br>10°C 이상 | 3              | 6  | 8   |

## (2) 동바리 존치기간

-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 3.9.2 해체

-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3.10 거푸집의 재사용

- 3.10.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 3.10.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땀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땀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3.11 현장품질관리

- 3.11.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 중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3.11.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 표)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5T-602          |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

3.11.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11.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1.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

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03-2 철근공사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이 사방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15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 1.3 제출물

##### 1.3.1 시공상세도면

###### (1)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② 스터립 및 띠철근의 위치

③ 정착, 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④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⑤ 폭고정근의 배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3)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도급자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1) 철근

###### (2) 간격재 및 버팀대

##### 1.3.3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 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4.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용으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4.3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 2. 재료

### 2.1 재료일반

#### 2.1.1 철근

KS 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설계 기준 강도  $F_y=4,000\text{kg/cm}^2$ )을 사용하며, 규격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착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의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 2.1.2 용접철망

(1) 용접철망 : KS D 7017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막 크기를 사용한다.

###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자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어닐링(Arm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야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야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 2.2.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 강도가 설치간격  $1\text{m} \times 1\text{m}$ 를 기준하여 해당 330kgf 이상이어야 한다.

#####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3 가공

### 2.3.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6)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7)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표)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 항 목      |   | 허용오차<br>(mm) |
|----------|---|--------------|
| 가공치수     | 스터립, 뾰족근, 나선철근                            | ± 5          |
|          | 주 근<br>원형철근 $\phi 28$ 이상<br>이형철근 $D25$ 이상 | ± 10         |
|          | 원형철근 $\phi 32$ 이상<br>이형철근 $D29$ 이하        | ± 15         |
| 가공후의 전길이 |   | ± 20         |

## 2.4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고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고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않된다.

## 3. 시공

### 3.1 시공조건 확인

-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 3.2.1 공통사항

-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 철근 조립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3.2.2 철근지지물(Bar-Support)

- (1) 철근은 고임재, 간격재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고임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하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 (3) 철근과 철근의 순간경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경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 (4)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5)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위      | 종류        | 수량 또는 배치  |
|---------|-----------|---|
| 슬래브     | 강제, 콘크리트제 |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m <sup>2</sup>   |
| 보       | 강제, 콘크리트제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기둥      | 강제, 콘크리트제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br>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br>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br>1.0m 이상 3개            |
| 기초      | 강제, 콘크리트제 | 면적 4m <sup>2</sup> 정도 8개, 16m <sup>2</sup> 정도 20개                               |
| 지중보     | 강제, 콘크리트제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벽, 지하외벽 | 강제, 콘크리트제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br>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br>횡간격은 1.5m 정도<br>단부는 1.5m이내 1.0m 이상 3개 |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 3.2.4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3.2.5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 (1)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 (2)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단, 28mm,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 및 사전 승인된 전문 업체시방서에 따른다.
- (4)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 및 사전 승인된 전문 업체시방서에 따른다.
- (5)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도면 및 사전 승인된 전문 업체시방서에 따른다.
- (6)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 종 류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cm <sup>2</sup> ) | 겹침이음의 길이 (L <sub>1</sub> ) | 정 착 길 이                   |                      |                    |
|--------|------------------------------------|----------------------------|---------------------------|----------------------|--------------------|
|        |                                    |                            | 일반(L <sub>2</sub> )       | 하 단 철 근              |                    |
|        |                                    |                            |                           | 작은보                  | 바닥,지붕,슬라브          |
| SR 24  | 150                                | 45d 갈고리 부착                 | 45d 갈고리 부착                | 25d 갈고리 부착           | 150mm 갈고리 부착       |
|        | 180                                |                            |                           |                      |                    |
| SD 30A | 210                                | 35d 갈고리 부착                 | 35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br>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br>150mm 이상 |
|        | 240                                |                            |                           |                      |                    |
| SD 30B | 150                                | 45d 또는<br>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br>30d 갈고리 부착      |                      |                    |
|        | 180                                |                            |                           |                      |                    |
| SD 35  | 210                                | 35d 또는<br>25d 갈고리 부착       | 30d 또는<br>20d 갈고리 부착      |                      |                    |
|        | 240                                |                            |                           |                      |                    |
| SR 40  | 270                                | 25d <sup>35d</sup> 갈고리 부착  | 20d <sup>30d</sup> 갈고리 부착 | 25d 또는<br>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br>150mm 이상 |
|        | 300                                |                            |                           |                      |                    |
|        | 360                                |                            |                           |                      |                    |
|        | 210                                | 45d 또는<br>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br>30d 갈고리 부착      |                      |                    |
|        | 240                                |                            |                           |                      |                    |
|        | 270                                | 40d 또는<br>30d 갈고리 부착       | 35d 또는<br>25d 갈고리 부착      |                      |                    |
|        | 300                                |                            |                           |                      |                    |
|        | 360                                |                            |                           |                      |                    |

-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라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sub>1</sub>)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 3.2.6 가스압접이음

#### (1) 적용범위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철근중 KS D 3504에 규정하는 D25 이상의 단면을 갖인 철근을 산소·아세틸렌가스를 사용하여 가열 및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자동가스이음(이하 압접이라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압접계획

- ① 시공자는 미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공자는 압접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가진 입접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압접작업시 압접위치, 철근의 종류 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따른다.
  - 철근의 압접위치는 시공상세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 시공상세도에 표시된 압접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압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의 압접위치가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압접위치는 응력이 작게 작용하는 부위 또는 직선부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접개소는 압접부에서 가공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철근의 재질 또는 형태의 차이가 심하거나, 철근지름이 7mm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압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재료

## ① 모재

- 압접을 할 수 있는 철근의 종류는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에는 균열, 흔 등 압접에 유해한 결합이 있어서는 안된다.

## ② 압접용가스

- 압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KS M 1101 산소의 규격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 압접에 사용하는 아세틸렌은 KS M 1102 용해 아세틸렌의 규격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 (4) 압접장치

## ① 자동압접장치

- 가스압접장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만 한다.
- 가열기 : 불대 및 화구로 구성된다. 불대는 산소 및 아세틸렌 용기에서 각각 보내진 가스를 혼합할 때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화구는 이 혼합가스를 뿜어내어 불꽃을 만드는 부분을 말한다. 불대 본체의 능력은 화구본체의 능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야하고, 화구는 8구 이상의 화구선을 가진 것으로서, 작업중 불꽃의 안정성이 좋고 철근지름에 적합하며 충분한 가열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철근  | D19~D25 | D29~D35 | D38~D41 | D51 |
|-----|---------|---------|---------|-----|
| 노즐수 | 8구      | 12구     | 14구     | 16구 |

- 화구선은 압접표면을 원주형 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압접기

- 압접기는 철근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 취급이 용이한 것으로서 철근 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 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업중 편심 및 흔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철근 지지부는 정착시 철근에 손상을 입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 ③ 가압기

- 가압기는 유압기 고압호스 및 램 실린더로 되어있고 다음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유압기는 가열 작업자가 동시에 가열조작 할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전동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펌프도 사용할 수 있다.
- 압접작업중 필요한 압력을 철근의 축방향에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가압능력을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text{kgf/cm}^2$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압접작업중 필요한 압력이 보완 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된 것으로 한다.
- SD500의 압접에 사용하는 가압기는 상한압·하한압을 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어장치

-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크기에 의하여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어장치는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 ⑤ 기타 : 그라인더, 연마шу돌, 케이블 등이 있다.

## (5) 압접작업

- ① 압접장치, 기구류의 정비 : 압접작업에 사용하는 장치, 기구류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② 시공전 시험

- 자동가스압접을 할 경우에는 장치가 정상이고 더욱기 장치의 설정조건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전시험을 하여야 한다.
- 시공전 시험을 위해 제작된 시험체의 외관검사는 '5.7'항 의하며, 강도시험을 '5.9'항에 의한다.

## ③ 철근압접면의 처리

- 철근면 주변에 유지, 도료 시멘트페이스트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와이어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압접면을 연삭 제거하고 철근 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 철근압접면에 유지, 도료, 시멘트페이스트등 기타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그라인더로 완전히 연삭 제거하고 압접면을 될 수 있는 대로 평면으로 하여 그 주변의 면을 가볍게 깍는다.

## ④ 가스압접의 가압과 가열 :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작업은 다음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을 압접기에 의해서 소정의 위치에 맞댈 때, 그 두면의 사이간격은 1mm이하로 하며, 편심 및 흔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 압접하는 철근의 축방향에 철근단면적당  $300\text{kgf/cm}^2$  이상의 가압을 하고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이때 불꽃의 중심이 압접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 방향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가열한다. 이때 가열범위는 압접부를 중심으로 철근지름의 2배정도로 한다.
- 철근 축방향의 최종가압은 모재 단면적당  $300\text{kgf/cm}^2$  이상으로 한다. 압접돌출부의 지름은 원칙적으로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압접돌출부의 길이는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형태는 완만하도록 한다.
-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흰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 가열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해야 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 SD500을 압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는 외에는 전항에 의한다.
- ※ 철근의 축 방향의 최종 가압력은 모재 단면에 대하여 상한압  $400\text{kgf/cm}^2$  이상으로 하고 또한 하한압에 대하여는  $200\sim250\text{kgf/cm}^2$ 로 한다.
- ※ 압접부의 부풀음 직경은 철근지름의 1.5배이상, 부풀음 길이는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상은 완만하게 되도록 해야한다.

#### (6) 검사

##### ① 일반사항

압접완료시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압접부의 검사는 외관검사, 초음파 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장시험 및 굽힘시험은 보조 검사로 한다.

검사는 감독원의 입회아래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시기는 감독원이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검사수량

- 외관검사는 안정수량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초음파탐상검사 및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의 검사율은 5.11항에 의한다.
- 발취검사를 할 때의 1 검사로트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같은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 한다.

##### ③ 로트의 합격 판정기준 : 로트의 합격 판정기준은 5.11항에 의한다.

##### ④ 불합격 로트 및 불합격 압접부의 보정

\* 불합격 로트의 보정은 5.10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한다.

\* 외관검사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는 5.10항에 의하여 다른 기술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정한다.

\* 초음파 탐상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정한다.

##### ⑤ 압접공사의 중지 및 재개

불합격 로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이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결함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제거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작하여야 한다.

#### (7) 외관 검사

##### ① 외관 검사의 대상 항목

압접부에 있어서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압접부의 돌출형태, 치수, 압접부의 비틀림,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의 유무로 한다. 검사는 육안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합격 판정 기준

- 압접부에 있어서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그림1 참조)은 철근지름(지름이 다른 경우는 가는 쪽의 철근지름)의  $1/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압접부의 돌출지름은 원칙으로 철근지름(지름의 다른 경우는 가는 쪽의 철근지름)의 1.4배가 되도록 한다.(그림2 참조) 단,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압접부의 돌출길이(그림3 참조)는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태는 완만하고 밑으로 쳐지지 않도록 한다.
- 압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그림4 참조)은 철근지름의  $1/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심한 구부러짐이 있어서는 안된다.

d : 공정직경

#### (8) 초음파 탐상 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은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다.

#### (9)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 ① 인장시험의 공시체

\* 자동가스압접의 경우 검사용 모델 공시체를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한다.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시공된 이음부분으로부터 잘라진 공시체에 대하여 인장시험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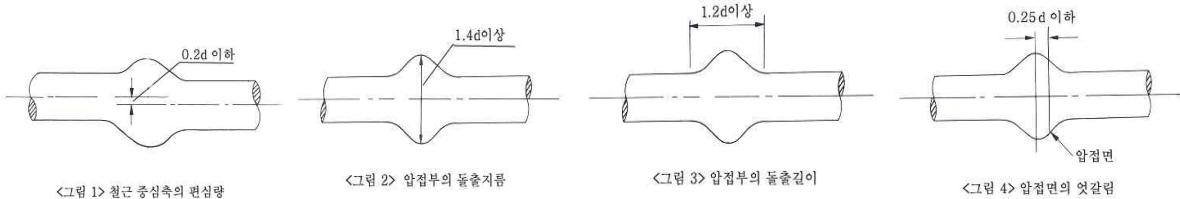
\* 잘라진 공시체로 인한 시공된 부분의 절단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치한다.

##### ② 인장시험 검사

KS B 024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방법)에 의한다.

### ③ 합격판정기준

KS D 5521(인장시험기) 및 KS B 5541(만능재료 시험기)에 의한 시험기를 사용하고 절단된 곳에 상관없이 최대 인장강도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격값을 만족시킨 경우 합격으로 한다. 철근지름이 다른 경우는 가는쪽 철근의 규격값을 만족시킨 경우로 한다.



### (10) 수정

#### ①. 외관검사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한다.
- 압접 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 돌출부를 만든다.
-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하였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 ②. 표준시방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용접부에 대하여는 용접개소를 절개하여 재용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 (11) 가스 압접 이음 검사 기준 (99' 개정)

|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br>의한 측정       | 압접작업완료시<br>전부                          |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위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
| 샘플링검사 | 초음파 탐사법<br>: KS D 0273 | 1검사      로트 <sup>1)</sup> 에<br>20개소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li> <li>•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li> <li>•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li> </ul>             |
|       | 인장 시험법<br>: KS D0244   | 1검사      로트에<br>3개 이상의<br>시험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li> <li>•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li> <li>•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li> </ul> |

주) 1)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인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 3.2.7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 (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후 시공하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와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3 청소

3.3.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뜯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3.3.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 3.4 시공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3.4.1 거푸집 면까지의 순간격 :  $\pm 6\text{mm}$

3.4.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text{mm}$

3.4.3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1)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pm 6\text{mm}$

(2) 깊이 200mm 이상 ~ 600mm 미만의 부재 : ± 13mm

(3)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 25mm

3.4.4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3.4.5 부재의 종방향 : ± 50mm

3.4.6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3.5 현장품질관리

#### 3.5.1 통지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원과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 3.5.2 시험

(1)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 종 류 | 항 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횟수   |
|-----|--|------------------------|---|--|
| 철 근 | 형상, 치수, 중량                             |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   | 각자름 및 각종류별 무게<br>20t 또는 그 단수마다<br>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br>규격품에 대하여는<br>감독원의 승인에 따라<br>강재검사 증명서의<br>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                        | KS B 0802<br>(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  |
|     | 휨                                      |                        | KS B 0804<br>(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
| 용접망 | 형상, 치수                                 |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   | 각자름 및 각종류별 무게<br>20t 또는 그 단수마다<br>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br>규격품에 대하여는<br>감독원의 승인에 따라<br>강재검사 증명서의<br>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                        | KS D 7017<br>(용접철망)<br>KS D 0802<br>(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br>KS B 0804<br>(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  |

(2) 조립 :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해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5.3 검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표)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 항 목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횟수                                    | 판정기준                            |
|---------------------------------------|-------------------------------------|---|---------------------------------|
| 철근종류, 자름                              |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자름의 측정 | 철근 반입 시                                   |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
| 가공치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 시<br>또는 협장가공 후<br>가공종별마다<br>샘플링검사 |                                 |
| 수량, 조립정밀도<br>위치의 정밀도<br>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br>및 육안검사                | 조립 중 또는<br>조립 후 수시                        |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br>규정된 것           |
| 철근 간격                                 | 자 등에 의한 측정<br>및 육안검사                | 조립 중 또는<br>조립 후 수시                        |                                 |
| 철근 고임재 및<br>간격재의 배치, 수량               | 육안검사                                | 조립 후 수시                                   |                                 |
| 철근의 고정도                               | 육안검사                                |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br>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

(1) 용접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②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자름, 표면현상

③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14-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이 시방들은 건축 및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16 굵기 정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정제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전동기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줄란 시멘트

## 1.3 제출물

###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 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 (2) 혼화제
- (3) 콘크리트 양생재
- (4) 시멘트

###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 (3)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 (5)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 ②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 ③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 (7) 콘크리트 양생계획

### 1.3.3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 1.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1.4.1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cm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 1.4.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3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1.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 1.5 환경조건

1.5.1 일 평균기온이 4°C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C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5.2 일 평균기온이 25°C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 2. 재료

### 2.1 재료

####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1.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4)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5)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7) 부순골재로 인해 양생중, 또는 양생후 구조체의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순골재를 사용하지 못하며, 만약 사용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2.1.3 물

-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 2.1.4 혼화제

- (1)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2) 방정제, 팽창제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3)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 2.1.5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 (1) 콘크리트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 ① A : 굵은 골재 최대치수  
 ② B : 호칭강도( $N/mm^2$  또는 MPa)  
 ③ C : 슬럼프 값

#### (2) 강도

- ①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 ②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원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 (3)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m^3$  이하이어야 한다.

#### (4) 콘크리트 성능기준

- ①.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의 범위는 표에 따른다.

- ②. 본공사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서를 따르며, 표기외 사항은 아래를 따른다.

구조용 :  $240kg/cm^2$

비구조용 :  $180kg/cm^2$ (마감용)

$150kg/cm^2$ (버림용)

표)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의 범위

| 사용 골재                       | 설계기준강도<br>(kgf/cm <sup>2</sup> ) | 기건단위용적 중량<br>(t/m <sup>3</sup> ) |
|-----------------------------|----------------------------------|----------------------------------|
| 굵은 골재1)                     | 180                              |                                  |
| 자갈, 부순돌,<br>고로슬래그,<br>굵은 골재 | 210                              | 2.2~2.4를 표준으로<br>한다.             |
| 모래, 부순모래,<br>고로슬래그,<br>잔 골재 | 240                              |                                  |
|                             | 270                              |                                  |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1.6 위커빌리티 및 슬럼프

- (1) 콘크리트의 위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되, 18cm 이하로 한다.

#### 2.1.7 압축강도

- (1)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 2.1.8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 (1) 단위수량은  $185kg/m^3$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kg/m^3$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시킬 수 있다.

-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m^3$ 로 한다.

- (3)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 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 시멘트의 종류   |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
|---|---------------|
| 포틀랜드 시멘트<br>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br>포틀랜드 포줄라 시멘트 A종<br>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65            |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br>포틀랜드 포줄라 시멘트 B종<br>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60            |

(4)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text{kg}/\text{m}^3$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사전승인된 공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60\text{kg}/\text{m}^3$ 를 넘어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건, 건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1.9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본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각 항에 따른다.

### 2.1.10 용어의 정리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300\text{kgf}/\text{cm}^2$  이상, 경량콘크리트중  $200\text{kgf}/\text{cm}^2$  이상인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바람 콘크리트, 밑장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않는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 부재단면 최소치수  $80\text{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해 내부최고온도와 외기의 온도차가  $25^\circ\text{C}$  이상 예상되는 콘크리트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r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 “3.6 한중콘크리트” 참조

**서중 콘크리트** - “3.7 서중콘크리트” 참조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호칭 강도** - KS 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 강도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배합 강도** -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자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렬에 의해 변형시 상면의 흘러내린 양을 표시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방법)

**컨시스턴스** - 주로 수량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블리딩**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레이던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블리딩수가 증발 후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미세한 물질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text{m}^3$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 수량** - 콘크리트  $1\text{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잔골재** - 체 규격  $5\text{mm}$ 체에서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굵은골재** - 체 규격  $5\text{mm}$ 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넘는 골재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콘크리트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시멘트, 물, 골재 외의 성분으로 부가혼합하는 재료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표면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감수제** - 소정의 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려고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자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자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공기량** - 내부 공기의, 콘크리트에 대한 용적비(%). 단, 골재내부공기는 불포함.  
**표준양생** -  $20\pm3^{\circ}\text{C}$ 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변화로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의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3. 시공

####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전 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 (2)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 (3) 운반로, 운반경로
-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 (5)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 3.2 작업준비

##### 3.2.1 타설일정의 통지

결합 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원과 시험 및 점검 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 3.2.2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 3.2.3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 (4)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 3.2.4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설치되는 습기 차단재( $0.03\text{mm} \times 2\text{겹}$ )의 시공은 이음부위를  $10\text{cm}$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 3.2.5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 3.3 시공기준

####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3.3.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 (1)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 (2)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릴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다짐 및 이음

#### 3.4.1 일반조건

-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 이상인 경우 1.5시간, 25°C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3.4.2 운반

##### (1) 슈트

-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 ②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0이 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cm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 ③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cm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넣는다.

##### (2) 콘크리트 압송

- ①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침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향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 ④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mm,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수송관은 가능한 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 ⑥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 (3) 버켓

- ①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 ②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 (4) 손수레

-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 3.4.3 부어넣기

- (1)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치기계획서에 따라 져야 한다.
- (2)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C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C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 (4)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 (5) 수직부재

- ①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②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 ③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 ④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 (6)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7) 복도난간, 발코니텍, 지붕 패러펫(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 (8) 칠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 (9)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하다.
- (10)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11)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mm이내, 구멍크기 2.04 cm<sup>2</sup> 이내, 강판두께 0.5mm 이상이어야 한다.

#### 3.4.4 다지기

-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 ①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 ②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 ③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 ④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60cm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 ⑤ 2개 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cm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일체가 되도록 한다.
  - ⑥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 (3)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 3.4.5 이음

- (1)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던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3) 거푸집과 철근의 겉부분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 (4)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 (5) 설치에 절해져 있지 않을 이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사용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 3.4.6 시공이음

-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 (3) 시공이음을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 3.4.7 수평시공이음

-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

하여야 한다.

-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 면에서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 3.4.8 연직시공이음

-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 (5) 지하 외부옹벽의 경우 이음부위에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 누수등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3.4.9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지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지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얹어지도록 해야 한다.

#### 3.4.10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자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자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 3.4.11 아치의 시공이음

-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 3.4.12 신축이음

신축이음에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 3.4.13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 3.5 양생 및 보양

#### 3.5.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3.5.2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3.5.3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옮겨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되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옮겨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4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3.5.5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3.5.6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C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5.7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내부 온도는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 O4 철골 공사

## 04-1. 철골공사 일반

### 1. 시공사 등의 품질관리

1.1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 2. 철골 제작업자의 선정

2.1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2.2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3.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3.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3.3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 시공계획서

- |        |            |             |
|--------|------------|-------------|
| ① 일반사항 | ② 공사개요     | ③ 공사담당 및 조직 |
| ④ 가설계획 | ⑤ 인원계획     | ⑥ 설치계획      |
| ⑦ 접합계획 | ⑧ 품질관리, 검사 | ⑨ 타 공사와의 관련 |
| ⑩ 안전관리 |            |             |

▷ 공장제작요령서

- |        |          |            |
|--------|----------|------------|
| ① 일반사항 | ② 공사개요   | ③ 공사조직     |
| ④ 재료   | ⑤ 제작, 용접 | ⑥ 품질관리, 검사 |
| ⑦ 기타   |          |            |

▷ 현장시공요령서

- |             |           |
|-------------|-----------|
| ① 일반사항      | ② 공사개요    |
| ③ 현장조직      | ④ 설치작업    |
| ⑤ 고력볼트 접합작업 | ⑥ 용접 접합작업 |
|             | ⑦ 안전관리    |

### 4. 반입검사의 실시

4.1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 5. 품질보증

5.1 품질보증의 원칙

-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 5.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 1) 설계품질의 파악
-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 6. 시공자의 품질관리

- 6.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 6.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 6.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 7. 철골제작자의 품질관리

### 7.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 7.2 품질관리 실시내용

####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8. 철골공장 제작공사

### 8.1 공작도

-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 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 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 3)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 마)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 8.2 원칙(原尺)

- 가) 원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 나) 원칙장 바닥 원칙작업을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다) 원칙장 바닥 원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 9. 현장조립공사

### 9.1 시공계획과 관리

- 가) 공사관리조직
  -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물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나) 공사계획
  -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 관리
  -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 9.2 정착

-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 다) 정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 9.3 앵커보울트

앵커보울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 9.4 앵커보울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보울트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보울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혹 을 둔다.

### 9.5 앵커보울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보울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보울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9.6 앵커보울트 양생

앵커보울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흰,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 9.7 베이스 플레이트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 9.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 9.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9.10 시공의 정밀도

##### 가) 앵커보울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보울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 나) 앵커보울트의 노출길이

보울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 9.11 앵커보울트의 조임

-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보울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 나) 앵커보울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 10.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증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기구와 설치후의 전체가 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 11. 설치계획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 12. 반입 및 구분

####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 13. 고력보울트접합

고력보울트 현장조임은 고력보울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보울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 14.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빈자동용접 또는 플렉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용접재료에 따른다.

##### 마) 용접시공

현장용법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용접시공 일반, 맞댐용접, 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용접부의 반입 검사, 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 15. 보울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보울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 16.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보울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보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줌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보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보울트를 1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 17. 병용접합

고력보울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보울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 05 판넬 공사

## 05-1. 판넬공사 일반

### 1. 총칙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판넬(이하 “그래스울판넬”이라 칭함)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 제 품                      | 관련 규정     |
|--------------------------|-----------|
| 도장용용 아연도금강판              | KS D 3520 |
| 발포폴리스티렌                  | KS M 3808 |
| 건축용 벽판(철강제)              | KS F 4724 |
|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 KS F 4731 |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2271 |

#### 1.2 용어의 범위

-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2)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인원을 말한다.

####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4 공사 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2. 판넬의 제원 및 물성

###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E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E.P.S판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 한다.

### 2.2 제원 및 물성

#### 가. E.P.S판넬의 제원

| 용도     | 외 벽 용                                       | 내 벽 용     | 지붕 용  |
|--------|---|-----------|-------|
| 판넬형태   | SW, SW-R.P                                  | SW,SW(민판) | SR,   |
| 폭(mm)  | 1,000                                       | 1,000     | 1,000 |
| 두께(mm) | 40, 50, 75, 100, 125, 150, 200, 300(비규격 가능) |           |       |
| 표 면 재  | 도장용용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실리콘, 폴리에스터 또는 불소코팅)    |           |       |
| 단 열 재  | 발포폴리스틸렌                                     |           |       |
| 접착제    | 폴리우레탄 접착제                                   |           |       |

##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 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 D 3520)

| 물 성   | 단 위                | 값                     |
|-------|--------------------|-----------------------|
| 무게    | kg/m <sup>2</sup>  | 4.17                  |
| 탄성계수  | ks/cm <sup>2</sup> | 211*10 <sup>4</sup>   |
| 열팽창계수 | cm/cm/°C           | 11.5*10 <sup>-6</sup> |

나. 도장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피 막 두께    |
|-----|------|-----------|
| 표 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     | 표면처리 | 실리콘 폴리에스터 |
|     |      | 불소코팅      |
| 이 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     |      | 5μ        |
|     |      | 10-20μ    |
|     |      | 20-25μ    |
|     |      | 5μ        |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 M 3808, 비드법 보온판 4호 기준)

| 물 성  | 단 위                 | 발포폴리스티렌 |
|------|---------------------|---------|
| 비 중  | kg/m <sup>3</sup>   | 15 이상   |
| 굴곡강도 | kgf/cm <sup>2</sup> | 1.5 이상  |
| 압축강도 | kgf/cm <sup>2</sup> | 0.5 이상  |

|       |                      |          |
|-------|----------------------|----------|
| 흡 수 량 | g/100cm <sup>3</sup> | 1.5 이하   |
| 열전도율  | kcal/mh°C            | 0.037 이하 |
| 적용온도  | °C                   | 70/-118  |

## 2.4 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흠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연속 프레스기에 의해 생산한다.

나. 모든 판넬과 도면은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 2.5 조립부자재

가.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후레싱은 일반적인 TYPE만 언급 :두께 0.5T)

| 종 류          | 규 격                        | 종 류          | 규 격                 |
|--------------|----------------------------|--------------|---------------------|
| 셀프드릴링 스크류볼트  | Ø 6 L=80,100,130,150,180   | 터치얼페인트       | 지정색                 |
| S.D.S 볼트캡    | Ø 6                        | 박공(일반)50T용   | 30*135*130*20*30    |
| 스텐와샤&EPD패킹   | Ø 6                        | 박공(일반)75T용   | 30*135*145*20*30    |
| SILICONE     | 비초산                        | 박공(일반)100T용  | 30*135*180*20*30    |
| 셋트양카         | Ø 9*4"                     | C/S유바 50T용   | 50*53*50            |
| 용마루상부후레싱     | 40*20*150*150*20*40        | C/S유바 75T용   | 50*78*50            |
| 용마루하부후레싱     | 100*100,150*150<br>200*200 | C/S유바 100T용  | 50*108*50           |
| 외부베이스(50T용)  | 42*60*18*10*1.2T           | 외부코너카바 50T용  | 20*10*100*100*10*20 |
| 외부베이스(75T용)  | 46*80*18*10*1.2T           | 외부코너카바 75T용  | 20*10*100*100*10*20 |
| 외부베이스(100T용) | 48*105*18*10*1.2T          | 외부코너카바 100T용 | 20*10*130*130*10*20 |
| C/S 앵글       | 50*50 외                    | 부칠TAPE       | 2T*24mm             |
| 리벳           | Ø 4                        |              |                     |

나.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후레싱을 포함한 조립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과 색상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3. 판넬의 조립시공

#### 3.1 일반사항

-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 3) 사용자재는 방정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정 페인트를 칠한다.
- 4) 칼라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 가장자리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해 사용한다.
-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E.P.S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방정처리 한다.

#### 3.2 지붕 판넬의 시공

- 1) 지붕 판넬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2) 지붕 판넬을 조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2.5m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 3) 지붕 판넬의 폭방향 고정은 판넬 산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 BOLT (Φ6)를 매장의 조인트에 고정하고, 풍하중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지붕판넬의 길이 방향 고정은 중도리마다 고정을 하고 중도리 간격이 2,500mm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4)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기밀 시공한다. (감독관과 협의 조건)
- 5) 지붕 E판넬의 길이방향 이음은 300mm이상 겹치고 보강 중도리가 반드시 설치되어 중도리 위에서 시공해야 하며,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칠 TYPE 또는 실리콘으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 6)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E.P.S판넬 상부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크로사를 삽입하여 기밀 시공한다.
- 7) 파라펫공사, 홈통공사, F.R.P 채광판공사 등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한다.
- 8)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3.3 외벽 판넬의 시공

##### 1) 종방향 우레탄 판넬 시공인 경우

- 가. 외벽 E.P.S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위에 설치하며 그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향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 후 E.P.S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 다. 외벽 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장선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E.P.S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단, 횡판넬 시공시 CULUME의 간격이 3m 미만일 경우 장선을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무관함.
- 라.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요철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마. 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 바. 외벽 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종방향 2m 이내로 장선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사. 외벽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E.P.S판넬 단면부와 E.P.S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2) 횡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

- 가. 외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향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 후 E.P.S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 다. 외벽 판넬 설치 전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
- 라.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 마.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Φ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어 E.P.S판넬 연결 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바. 외벽 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사. 외벽 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E.P.S판넬 단부와 E.P.S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3.4 천장 판넬의 시공

- 1) 천장 판넬의 시공전 벽 E.P.S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뒤 천장 E.P.S판넬을 조립한다.
- 2) 천장 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 3) 천장 판넬의 폭방향의 이름은 벽 E.P.S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3.5 내벽 판넬의 시공

- 1) 내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2)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 3) 베이스찬넬 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배관은 베이스찬넬 시공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4) 내벽 판넬의 길이는 E.P.S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5)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6) 크린룸과의 개념상 용어는 달리하나 부자재의 선택이나 실링처리 및 기타 설비 등과의 연계를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3.6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 1) 보온 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L 40\*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 2)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E.P.S판넬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 3) 내부 홈통 판넬의 깨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4) 내부 홈통 방수재를 설치하고 지붕 E.P.S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 3.7 파라펫 보강 판넬의 시공

-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 판넬 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후 E.P.S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후레싱으로 마감한다.
- 2) 파라펫후레싱의 상부면은 건물 안쪽으로 경사를 두고 설치한다.

## 4. 판넬의 조립시공 공통사항

### 4.1 시공전 확인사항

- 1)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2) 절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판넬 설치에 필요한 절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E.P.S 판넬겹침 부위 보강, 행  
가 도어 레일설치부분, 스윙도어 개구부 보강 등을 절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 3)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  
게 통보한다.

###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 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 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 3)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 4.3 청소 및 보양

- 1)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준공청소 개념과는 구분)
- 2) 작업중 발생된 E.P.S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 3) 공장에서 생산되어 적재중, 운반중, 현장도착 후 장기 적재로 인한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  
하여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녹제거제는 신우산업으로 문의)

### 4.4 교체 및 수리

- 1)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수리 되어야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 5. 자재 관리

### 5.1 운반

- 1) 판넬의 길이는 화물차의 적재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  
반용 파렛트(아데)를 사용한다.
- 3)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 5.2 하차

- 1)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 2) 하차시 제품에 접하는 장비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장비(합판, 고무 등)를 장착  
하고 청결도를 유지 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3 보관

-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판넬이 휙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1.5M이하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  
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 3) 현장 제품 적재시 1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피하여야 한다.

4)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5.4 인 양

- 1)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한다.
- 2) 자붕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자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인양한다.
- 3) 인양시 사용하는 장비는 제품을 보호하는 보강을 하여 제품의 손상을 막는다.

#### 5.5 소운반

- 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 5.6 PL 법

- 1) 현장대리인은 자재 납품시 운반자에 의해 전달되는 제품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 6. 연관공사의 시공 한계와 협의사항

6.1 판넬공사의 시공 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 6.2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 6.3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 6.4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 6.5 판넬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E.P.S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의 시공한계도 사전 협의 한다.

#### 6.6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E.P.S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06 건축물 부대 공사

## 06-1 공통사항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1.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시방서 및 본 공사 관련 타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 1.1.2 재료 및 마감 등에 관하여 본 시방절에 없는 내용은, 다른 시방절의 해당 자재 및 유사 공정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1.1.3 각각의 공사 부위는 도면에 따른다.

#### 1.2 관련시방

- 1.2.1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의 각 해당 사항에 따른다.
- 1.2.2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서 권장하는 내용에 따른다.
- 1.2.3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1.2.4 필요시 감독원이나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된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편 총칙 공사관련제출물”의 각 해당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3.1 시공상세도면  
마감나누기를 포함하여 전개도 및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처리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2 제품 자료  
마감재 및 부속재, 긴결철물, 접착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3.4 견본  
색상, 마감, 질감 등을 판별할 수 있는 500 x 500mm 크기이상의 견본을 3조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1.3.5 품질보증서 및 품질인증서류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보증기간 5년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시험을 통하여 방화, 방염, 방연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한다.
  - 1.3.6 제조업자의 작업 및 유지관리 지침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면처리 과정과 주변상태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품질보증

- 1.4.1 제조업체 자격 : 해당분야 공인 제조경력 5년 이상인자.
- 1.4.2 시공업체 자격 : 해당공종 공사에 공인 시공경력 5년 이상인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1.5 견본시공

1.5.1 모서리, 이음부등을 포함하여 각 바탕별로 견본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 면적 및 위치는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2 견본 시공부위는 문서로서의 승인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 1.6 공사전 협의

공사를 시작하기전 연관된 모든 공종의 시공자들과 감독원, 감리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7 자재 반입 및 관리

자재는 공장반출시의 포장을 미개봉 상태에서 제조사명, 상표, 작업지침 등이 적힌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자재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적재한다.

### 1.8 작업조건

1.8.1 현장은 청결, 건조, 먼지가 없어야 한다.

1.8.2 시공부위는 바르기 전, 작업기간, 작업완료 후 적정 보양기간 동안 사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 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8.3 시공현장에는 시공관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 1.9 보수용 재료

1.9.1 각종 소모성 부품 및 마감자재의 소요량의 5%를 작업완료시에 보수용으로 제공한다.

1.9.2 보수용 자재는 설치된 자재와 동일 제조공정(Lot)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색상과 무늬가 일치하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자재

### 2.1 일반사항

2.1.1 자재선정전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사항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 성적표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자재선정시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2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품질등급이상이거나,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사용상 실용성을 순상하는 얼룩, 오염, 흠, 주름, 기포, 이물질의 흔입, 구부러짐, 재료의 어긋남 등이 없어야 하며, 표준색상 범위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1.4 필요시 방화, 방염, 방연시험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3. 시공

### 3.1 공통사항

3.1.1 사전 제출된 작업공정 계획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1.2 사전에 제출된 견본품과 시공할 자재를 재확인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 3.2 시공시 품질관리

3.2.1 주요 관리사항

- (1) 재료 이음, 조립의 방향 이음매의 검사.
- (2) 표면에 접착제 묻음여부 확인.
- (3) 마무리 상태 검사.

### 3.3 청소 및 보양

- 3.3.1 작업이 완료된 후에, 마감 표면은 색상과 문양이 깨끗이 나타나게 하고, 더러움이나 얼룩이 없도록 잔재, 오물, 기타 불순물 등을 청소한다.
- 3.3.2 마감재 설치 전에 가조립용 부재들을 제거하고, 제거했던 각종 부착물을 다시 설치한다.
- 3.3.3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며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게 적합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3.3.4 시공완료 부위와 그 인근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보양한다.

### 3.4 완성품 관리

- 3.4.1 유지관리는 제조업자의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하며 오염방지는 물론이고 마감자재가 지니고 있는 패턴이나 컬러는 지속적으로 유지 시켜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여 항상 새것 같은 느낌으로 사용한다.
- 3.4.2 오염의 정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얼룩을 지우는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검사를 하여 약품이 마른 후 탈색이 되는지 확인한 후 사용한다. 얼룩이 다 지워지고 나면 용제를 사용하여 린스한 후 마른천이나 종이 타월 또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

# 07 폐기물처리 용역 수행지침서

## 1. 적용범위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2. 관련 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 나. 산업안전보건법 |
| 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라. 수질환경보전법 |
| 마. 소음진동규제법          | 바. 토양환경보전법 |
| 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            |

## 3. 일반사항

### 가. 용어의 정의

- 1) 계약서라 함은 용역 도급계약서와 계약 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 4) 발주자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감독원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6)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7)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공사시행

#### 1) 도급자의 의무

- 가) 도급자는 용역목적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다) 도급자는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도급자는 용역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을 지정,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을 추진토록 한다.
- 마) 도급자는 용역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급자 잘못 으로 야기된 민원은 감독원에 보고 후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 바)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폐기물처리 등 제거에 소요 되는 비용은 도 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2) 용역의 계획

-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용역전반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예 정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도급자는 용역 전 용역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하고, 주요 장 비반입 및 사용계획, 노무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을 포함한 용역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전문기술자의 배치

-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 술 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4) 제보고 및 서류양식

- 가) 도급자는 계약서에 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자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나)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5)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 제 법규 준수

- 가)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 7) 용역의 중지

- 가)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나)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다. 용역기준

설계도서는 용역시행에 앞서 도급자는 제 시방서, 내역서 등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취지에 적합한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라. 공사사진 등 제출

도급자는 공종별로 착공 전, 중, 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내용 등을 붙여 사진첩과 파일 등을 CD로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히 건설폐자재, 폐기물, 혼합폐기물을 확실히 구분하여 채집, 상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자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차량번호, 크기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 반출량 및 재료성상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마. 안전관리

-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 겸임금지와 현장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3) 도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 지시가 있을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 5) 도급자는 설계서상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도급자는 용역수행중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7) 도급자는 용역 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바.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사. 준공처리

현장대리인은 관계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폐기물처리업체의 인허가 사항 및 폐기물처리대장(종류별 반입 및 처리량 등),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용역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용역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시행령 제 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호 4기준 및 방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 등),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폐스레트 등) 처리에 있어 처리량은 계근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또한 발주자가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계근 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사업장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 사업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성토용은 최대직경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에 맞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하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 공급하여야 한다.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이 처리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3관련 별표6의2(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처리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시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12.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3.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14.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5.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16.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자명자가 운전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좁은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      방      서

공사명 : 산업기계 자율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2024. 09.

##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배관설비공사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기계)

## 1.1 일반사항

### 1.1.1 공사개요

공사명 : 산업기계 자율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위치 : 한국기계연구원내

### 1.1.2 적용 범위

-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산업기계 자율화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1.1.4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설계도면
  -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 라. 산출내역서
  - 마. 승인된 시공도면
  -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사

-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1) 작업 보고서
-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한다.

####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1) 공사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 1.1.13 시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축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자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 1) 시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 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관류보일러

③ 볼류트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

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18 청소와 뒷정리

- 가. 보온을 요 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 1.1.19 시운전

-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1.1.20 인수인계

-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2 공통 사항

### 1.2.1 용접 공사

-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를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를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파이프색과 동일하게 도색한다.

-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mm이어야 한다.
-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촉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 1.2.4 스테인리스 강관

#### 1) 용접 시공

-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 한다.
- 나) 용접은 아르곤가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 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 다) 옥외 매립부, 벽 매립에는 스텐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 한다.

####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KS D 0237에 따른다.

###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 1) 도장 공사

-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을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1.2.6 보온 공사

-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 8) 각종 뱀브 및 드레이н 뱀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 1.2.7 기타

-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3)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 4) 준공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해당사항에 한하여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 제2장 배관설비공사(기계)

### 2.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 2.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2.2.1 양수기 (계량기)

-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text{kg/cm}^2$ 이하에 사용한다.

#### 2.2.2 슬리브(시공상세도 참조)

#### 2.2.3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 2.2.4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활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총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 2.2.5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활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총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2.6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2.3 시공

### 2.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 1) 목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 (옥내배관, 옥외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 한다.)

① 범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circ\text{C} \sim 90^\circ\text{C}$ 이하 (권장 사항  $3^\circ\text{C} \sim 90^\circ\text{C}$ ,  $+/-2^\circ\text{C}$ )

#### 3) 시공방법

#####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 3.3.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 한다.

### 3.3.3 소재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파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재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재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 3.3.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 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 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 한다.

### 3.3.5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 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율통불통함이 없이 배관 한다.

### 3.3.6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 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싱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 3.3.7 통기배관

#### 1) 일반사항

-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 한다.
-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3) 결합통기

결합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 3.3.9 기타

-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 한다.
- 3) 용접조건: 0°C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C 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3.4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구분   | 시 험 방 법  | 수 압(만 수) 시 험 |                      |               |                     |      | 가압시험 |
|------|--|--------------|----------------------|---------------|---------------------|------|------|
|      |  | 최 소 압 力      | 10kg/cm <sup>2</sup> |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 설계도에서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 3mAq |      |
|      | 최소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30                  | 30   | 15   |
| 급수수급 | 직 결  | ●*           |                      |               |                     |      |      |
|      | 고가수 이하   |              | ●**                  |               |                     |      |      |
|      | 양 수 관  |              |                      | ●**           |                     |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 배수관   |              |                      |               | ●                   |      | ●    |
|      | 대지 배수관   |              |                      |               |                     | ●    |      |
|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                      |               | ●                   |      |      |
|      | 배 수 펌프 토 출 관   |              |                      | ●             |                     |      |      |
| 비 고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측정된 것으로 한다.<br>*: 수도법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br>**: 최소 7.5kg/cm <sup>2</sup> 로 한다. |              |                      |               |                     |      |      |